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
 편집 : 문화공보관 심계섭  
 전화 75-7834  
 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  
 전화 75-6090

제 753 호  
 1980. 2.18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		
제 1406 호 :	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	3
◎ 규 칙		
제 1843 호 :	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	3
제 1844 호 :	서울특별시시정연구단선치운영규칙	4
제 1845 호 :	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규칙개정규칙	5
◎ 고 시		
제 50 호 :	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 지정자지정	10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52 호 :	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	12
제 53 호 :	도시계획시설 (미관지구) 지적승인	14
제 54 호 :	사방지정고시	15
제 55 호 :	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시행허가	16
제 57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	17
제 58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1
제 59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2
제 60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인가	22
제 61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8
제 63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변경허가	29
제 6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일부변경	30
제 65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정정지적승인	32
제 66 호 :	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	33

◎ 공 고

제 37 호 :	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공고	33
제 42 호 :	반도체정기구정비지구건축계획변경공람공고	34
제 43 호 :	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	34
제 44 호 :	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행정처분	35
제 13 호 (동대문구공고) :	공인신조개각공고	35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“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”를 이에 공포한다

1980.2.18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장갑(인)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406 호

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. 제 2 조 중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학군은 후기 (주간)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9 개의 학군을 둔다.

② 학군별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학군 소속지역내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.

④ 영 제 112 조의 6 제 1 항 단서해당자는 그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또는 인근 학군에 속한다.

제 3 조 중 제 1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및 제 3 항을 삭제한다.

① 일정 후기 (주간) 학교에의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학상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학교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.

④ 통학상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별 후기 (주간) 학교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근학군의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.

부 칙 (1980.2.18)

이 조례는 1980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.2.18

◎ 서울특별시규칙 1843 호

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길음택지 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2 항 중 “예산과장”을 “예산1 담당관”으로 하고 “주택개발과장”을 “재개발2 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설치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정 상 천 ㉑

1980.2.19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844 호

서울특별시시정연구단설치 운영규칙

제 1 조 (설치)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연구기획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한다

제 2 조 (구성) ①시정연구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전문직원 규정에 의한 전임직원을 둔다.

②전임직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비전임직원을 임명 활용할 수 있다.

③시정연구단의 기능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분야를 수시 지정하여 연구반을 편성 또는 개편한다.

제 3 조 (기능및 자율적운영) ①시정연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

시장에게 직접보고 건의할 수 있다.

1. 장기정책방향, 증기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

2. 외부용역및 내부연구를 위한 과제선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

3.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보고

제 4 조 (지원) ①관계부서의 장은 시정연구단의 조사연구 활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기획관리관은 제 1 항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총괄 조정하고 각국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시정연구단의 연구조사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.

③시정연구담당관은 시정연구단의 사무등 간사역활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복무등) 시정연구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원규칙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정 상 천 ㉒

1980.2.20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845 호

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규칙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원관리규칙

제 1 조 ( 목적 ) 이 규칙은 지방전문직원규정 ( 이하 " 영 " 이라한다 ) 제 14 조의 규정에 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채용계약서서식등 ) ①지방전문직원 ( 이하 " 전문직원 " 이라한다 ) 채용계약서 ( 이하 " 계약서 " 라 한다 ) 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을 추가할수 있다.

②영 제 1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직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때는 계약서의 " 비전임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" 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 채용협의 ) ①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영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요청할 때에는 다음

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 . 채용 예정자조서 ( 별지 제 2 호 서식 ) 1 부
- 2 . 전문직원 채용계약서 1 부
- 3 . 예산현황
- 4 . 당해기관의 정원표
- 5 . 기타자격 및 채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(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등 ) 각 1 부

②전문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임용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기획관리관에게 제출, 그 자격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1 . 이력서 1 부
- 2 . 자격및 경력증명서 1 부

제 4 조 ( 채용구비서류 ) ①전문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"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" 에 의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수 있다.

제 5 조 ( 3 급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자의 채용분야 ) 영 제 14 조중, 3 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분야는 별표 1 과 같다.

제 6 조 ( 보수액결정 ) 보수액의 결정은

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난이도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내용과 상응한 보수액을 확정하여야 한다.

발급은 “공무원증규칙” 및 “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요령”에 따라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다.

부 칙

제 7 조 (지방전문직원중) 전문직원중의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

(별표 1)

3급이상공무원근무경력자의채용분야

기술직렬 ( 18 개 )	기계, 전기, 섬유, 화공, 조선, 금속, 채광, 수의, 의무, 약무, 보건, 선박, 토목, 건축, 측지, 통신사, 통신기술, 전송기술
연구직렬 ( 5 개 )	학예연구, 공업연구, 광업연구, 농업연구, 보건연구

\* 지방공무원 임용령 “별표 1”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 해당직렬임.

(별지 제 1 호서식)

지방전문직원채용계약서

지방전문직원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전문 직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“갑”이라 하고 채용 예정자를 “을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계약당사자)

(갑)

(을) 본 적:

주 소:

성 명:

생년월일:

제 2 조 (지방전문직원의 담당업무)

제 3 조 (계약기간)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제 4 조 (주당 근무시간)

제 5 조 (권보수 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)

제 6 조 ( 신분 )

가 . 직군 및 등급 :

나 . 전임 또는 비전임 구분 :

제 7 조 ( 계약의 해지 ) “갑”은 “을”이 영 제 8 조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.

제 8 조 ( 복무 ) “을”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“갑”의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내지 제 56 조와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제 2 장 및 제 3 장 제 21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.

제 9 조 ( 권리대습제 ) “을”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“갑”이 승계한다 .

제 10 조 ( 해석 )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“갑”의 해석에 의한다 .

제 11 조 ( 기타계약조건 )

가 . “을”은 전문직원규정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.

나 . “을”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.

다 . “을”은 법령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.

라 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 12 조 ( 비전임 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)

년 월 일

갑 :

을 :

주 소 :

성 명 :



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

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정자치정

- 1. 건설부고시 제 398 호 ( 79.11.7 )  
로 아파트지구로 지적 승인된 강동구명일동 309-1 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 조, 제 45 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기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( 주택행정과 ) 및 강동구청 ( 시민봉사실 )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.

1980.2

서울특별시 장

○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내역

가. 사업시행자: 남영건설(주)

대표이사 남 덕 현
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

강동구명일동 309-1 번지와 42 필지

다. 사업개요

○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

○ 사업규모: 아파트건립

( 12층18동3,126세대 )

○ 사업시행면적: 136,213 ㎡

( 41,204 평 )

○ 사업비: 56,268,000 천원

○ 사업기간: 80.1. .-82.12.31

라. 관계도면의 열람기간

1980.2.15-80.2.22 (7일간)

마. 열람장소

서울특별시 주택국

( 주택행정과 )

강동구청 ( 시민봉사실장 )

사업시행지정자신청토지조사

( 영일동남영아파트 )

순위	지 명	지 번	지 적	소 유 자		시용승락	비고
				주 소	성 명		
1	영일동	산 10	3,028	경기양주진전면배양리 277	정 현 수	승 락	
2	"	산12-5	1,377	안양시안양동 1501-1	황 사 천	"	
3	"	산13-2	8,029	중로구명분동4가 1921-14	이 근 웅	"	
4	"	산24-1	11,247	안양시안양동 901-1	단 사 천	"	
5	"	산25-7	4,476	성동구행당동 136	김 규 복	"	
				성동구사근동 146-56	김 명 길	"	
				중구신당동 80-4	김 순 자	"	

순위	지명	지번	지적	소유자		사용승락
				주소	성명	
				충남공주군공주읍교동 175	김정자	승락
				성동구사근동 146-56	김징애	"
				"	김영애	"
6	명일동	산 23-1	6,248	강남구천호동사 23-38	윤용희	"
7	"	산 14	12,298	마포구서교동 381-301	김왕원	"
8	"	산 15-1	13,091	안양시안양동 501-1	단사천	"
9	"	산 16	9,322	서대문구평창동 131-21	유재덕	"
10	"	산 22	8,727	안양시안양동 531-1	단사천	"
11	"	300-1	2,229	성북구장위동 230-110	서원영	"
12	"	301-2	149	안양시안양동 501-1	단사천	"
13	"	301-3	36	"	"	"
14	"	309-1	24,850	동대문구전농동 90-3	학교법인 해병학원	"
15	"	313-2	2,612	안양시안양동 501-1	단사천	"
16	"	313-3	2,493	"	"	"
17	"	313-4	813	"	김춘순	"
18	"	314	615	"	"	"
19	"	315-3	1,058	"	"	"
20	"	315-1	2,493	"	단사천	"
21	"	315-5	1,815	"	"	"
22	"	315-4	1,805	강동구천호동 423-38	윤용희	"
23	"	12-16	595	"	"	"
24	"	12-17	1,299	"	"	"
25	"	21	466	안양시안양동 501-1	단사천	"
26	"	22	529	"	"	"
27	"	23	797	"	"	"
28	"	293-9	367	강동구명일동산 15-2	한훈	"
29	"	293-6	1,131	"	"	"
30	"	293-8	109	"	"	"
31	"	293-3	754	"	"	"

순위	지명	지번	지적	주소자		사용승락
				주소	성명	
32	명일동	294	3,326	광주군 동부면창양리 240	윤정섭	승락
				성동구 행당동 315-80	윤완상	
				광주군 동부면창양리 410	윤용호	
				성동구 신당동 80-18	윤주호	
				성북구 정릉동 산 72-1	윤영철	
				광주군 동부면창양리 239	윤진호	
				" 318	윤동호	
" 242	윤영창					
" 산 3-2	윤덕호					
33	명일동	295-2	846	강동구 명일동 12	김성진	승락
34	"	295-3	1,663	"	"	"
35	"	294-1	1,904	"	서울시	
36	"	296-7	19	강동구 천호동 296-4	학교법인 천호학원	
37	"	296-6	123	"	"	
38	"	296-4	2,238	"	"	
39	"	296-5	10	"	"	
40	"	296-2	83	"	"	
41	"	296-3	269	"	"	
42	"	296-8	461	"	"	
43	"	296-1	413	"	"	
계	43 필지		136,213㎡ (41,204평)	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 호

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

1.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(76.8.21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(76.10.2)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강남구청담동영 동아아파트지구 (제 4-1 지구 일부) 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 조 제 45 조

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(주택행정과) 및 강남구청 (시민봉사실)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.

1980.2.

서울특별시장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내역</li> <li>가. 사업시행자 : ㈜한양주택 배종열</li> <li>나. 사업시행구역의위치 : 강남구 청담동 (영동아파트지구제 4-1 지구 일부) 18번지의 31필지 (별첨토지조서및도면)</li> <li>다. 지정면적 : 9,531.9 평</li> <li>라. 사업개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규모 : 아파트 12층 3동 717세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구센타 1층 1동</li> <li>○ 사업비 : 15,210,450 천원</li> <li>○ 사업기간 : 80.2. .~82.12.31</li> <li>○ 관계도서열람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80.2.15~80.2.22 ( 7 일간 )</li> <li>○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주택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 주택행정과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강남구청 ( 시민봉사실 )</li> </ul>
---	--

토 지 목 록

동 명	자 번	구획번호	면적 ( 평 )	소 유 자	비 고	
청담동	51		5,634.7	㈜한 양 주 택		
"	52-1					
"	-2					
"	-3					
"	-4					
"	53-5					
"	-6					
"	-7					
"	-8					
"	54	148				
"	55					
"	53-1					
"	-2					
"	-9					
"	-10					
"	18					
"	45-1					
"	20					
"	21					
"	42-1					

종 명	지 번	구획번호	면적 ( 평 )	소 유 자	비 고
청담동	42-2				
"	43-1				
"	40-2				
"	41-2				
"	48-1				
"	63				
체비지	148-1	148	2,616.3		
"	148-3	148	60.6	취한 양 주 택	
"	148-8	148	582	"	
"	148-5	148	95.5	서 울 시	공공용지
"	148-4	148	100.4	"	"
"	148-10	148	442.4	"	"
총 계			9,531.9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3 호

도시계획시설 (미판지구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 ( 80.1.19 ) 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 79.12.

10 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.2.15.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 (미판지구)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종 번	연 장	면 적	위 치	비 고
기 정	4-30	1,870m	20,880㎡	문배동-마포동 (옥천북개도로)	12 m
변 경	"	"	24,060㎡	문배동-옥천구간 530 위치조정	15 m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4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방지정고시</p> <p>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</p>	<p>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2.1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사 방 지 지 정 명 세 서

소재지	지 번	지정 면적	소 유 자 또 는 점 유 자				
			시 군	읍 면	동 리	주민등록번호	성 명
성북구 돈암동	산 11-293	㎡ 16,212	서울시	성북구	돈암동 173-1		학교법인성신학원 이사장 이 숙 중
	산 11-209	㎡ 2,281	"	"	"		"

사 방 지 지 정 조 서

조사자성명

(인)

토지의소재지	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 11-209 번지의외 1 필				
조사년월일	1980.2				
사업계획승인 년 월 일	1977.8			승인 번호	
사방지지정면적	18,493 ㎡ ( 5,604 평 )				
토소 유 지자	주 소	성북구돈암동 173-1 번지			
	주민등록 번호		성명	학교법인성신학원 이사장 이 숙 중	
사방지의 지정 이유	사방사업 및 조립지역으로 사방사업법 제 3 조 및 동법시 행령제 1 조 동제 20 조에 의하여 사방지로 지정.				
비 고	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

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주택  
지조성사업 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( 80.1.22 ) 및 동고시 제 24 호 ( 80.1.26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마포구성 산동산 11-47 번지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) 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시민봉사실 도시정비과 및 한양학원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2.16

서울특별시장

사업개요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마포구성 산동산 11-47 번지의 3 필지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)
3. 사업의규모 : 총면적 11,500 ( 약 3,478 평 )
4.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: 서울시성동구

행당동 17 번지

학교법인 한양학원이사장 백경순

5. 사업기간 : 80.2.16-80.6.30.
6. 사용할토지 : 별첨 ( 생략 )
7. 위치및계획평면도 : 별첨 ( 생략 )
8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 생략 )

허가증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 마포구창전동 산 11-47 번지의 3 필지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)
3. 사업규모 : 총면적 11,500 ( 약 3,478 평 )
4.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: 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번지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백경순
5. 사업허가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
6. 사업기간 : 80.2.16-80.6.30
7. 사용할토지 : 별첨 ( 생략 )
8. 토지소유자 : 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.
9. 위와같이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동법시행령 제 26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권한위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) 시행허가를 별첨 허가조건 및 설계부서와 같이 허가함.

1980.2.16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

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( 71.4.7 ) 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2 호 ( 75.11.24 ) 로 지적승인된 강남 1 로 ( 풍납동 )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공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도로과 및 강동구청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2.18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72-3 의 10 필지
2. 사업시행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강남 1 로 ( 풍납동 ) 건설공사
3. 사업시행 규모 : B = 20 미터  
L = 3,800 미터  
임체시설 2 개소 ( 잔설 및 천호대교 남단 ) 교량 1 개 ( 성내교 : B = 16 미터 , L = 150 미터 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장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79.10.26 - 80.12.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:
8. 공사설계도서 : 벌침 ( 생략 )
9. 위치 및 계획 평면도 : 벌침 ( 생략 )

의 의 목록 ( 토 지 조 서 )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적 (㎡)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천호동	472-3	대	99	천호동 472	김 용 철
2	"	472-5	대	137	"	"
3	풍납동	60-11	대	213	풍납동 52	박 기 태
4	"	60-15	대	2	아포, 하수동 13	조 영 방
5	"	60-9	대	77	풍납동 52	박 기 태
6	"	59-6	대	59	종로, 공평동 4	이 성 경
7	"	59-4	대	135	"	"
8	"	58-3	대	47	풍납동 58-3	정 재 현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소유자	
					주소	성명
9	풍납동	58-7	전	21	천호동 472-3	김용철
10	"	58-11	전	111	" " "	"
11	"	58-4	대	48	" 58-4	"
12	"	57-1	대	273	상도1동 417-3	윤경열
13	"	57-4	대	110	"	"
14	"	57-35	대	90	풍납동 66-28	최수길
15	"	57-25	대	25	성내동 318	이춘명
16	"	57-36	대	20	풍납동 66-28	최수길
17	"	57-19	대	71	군자동 88-27	최운천
18	"	57-27	대	17	성동구군자동 88-27	"
19	"	57-9	대	82	" "	"
20	"	57-29	대	80	57-29	김상두
21	"	57-30	대	17	"	"
22	"	57-60	대	166	상도1동 417-3	윤경열
23	"	57-24	대	20	중구조동 53-19	"
24	"	56-4	전	30	" 쌍림동 257-2	김필한의1
25	"	56-8	전	59	" " "	"
26	"	57-61	대	350	" 초동 53-19	윤경열
27	"	57-31	대	98	풍납동 57-31	이만성
28	"	57-17	대	18	" 57-17	안재숙
29	"	104-1	전	62	경기양주장촌부곡리 46-1	한동호
30	"	104-8	대	1,063	경기양주장촌 " "	"
31	"	99-59	대	14	풍납동 99-11	임수복
32	"	99-58	대	20	" 99-10	정인영
33	"	99-57	대	30	" 99-9	최옥분의41
34	"	99-60	대	5	" 65	권태갑
35	"	99-9	대	42	" 99-9	최옥분
36	"	99-10	대	40	" 99-10	정인채
37	"	99-11	대	32	" 99-11	임수복

연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격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39	풍납동	99-62	대	36	풍납동 99-9	최옥분의 4인
40	"	99-16	"	30	" 99-10	정인채
41	"	103-5	"	132	" 103-5	김소부
42	"	103-35	"	47	" 103-6	김종갑
43	"	103-9	"	77	전농동 50	오송택
44	"	103-37	"	30	잠실 4 동장미 APT2동 1007	장두석
45	"	72-24	"	13	인현동 271-154	오윤균
46	"	72-23	"	115	"	"
47	"	72-22	"	176	관훈동 184	이종인
48	"	98-21	"	223	"	"
49	"	98-20	"	359	풍납동 129	이영순
50	"	103-6	"	36	풍납동 103-6	김종갑
51	"	98-10	"	60	" 129	이영순
52	"	98-13	전	95	" "	"
53	"	98-14	대	51	" "	"
54	"	98-18	"	5	" "	"
55	"	107-2	전	62	" 96	손치영
56	"	108-1	"	153	부곡리 641-1	한동호
57	"	121-1	"	474	풍납동 186	이모숙
58	"	121-2	"	286	창신동 669-2	오옥련
59	"	120-1	임야	1,767	인천송악동 2 가 12	채수산
60	"	120-4	"	1,073	"	"
61	"	121-7	전	1,038	풍납동 97	손치공
62	"	121-27	"	2	창신동 660-2	오옥현
63	"	121-14	"	112	풍납동 97	손치공
64	"	121-29	"	245	천호동 410-160	김영복
65	"	121-8	"	76	창로창신동 67-1	박태범
66	"	121-18	"	197	금호 4 가 1173	김영희
67	"	121-9	"	91	"	"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적(㎡)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68	풍납동	121-5	전	102	종로창신동 669-2	오옥련
69	"	121-20	"	230	" "	"
70	"	120-2	"	2,360	구의동 93-1	권태갑
71	"	121-13	"	3	천호동 454-17	황명근
72	"	121-32	"	81	"	황명환
73	"	120-8	"	27	"	"
74	"	74-2	하천	122	미 등 기	
75	"	114-7	"	1,051	풍납동 97	이강암
76	"	118-3	전	165	둔촌동 75	조봉우
77	"	119-1	"	446	동작동반포 APT57 통 305호	
78	"	119-2	"	287	둔촌동 26-2	최정산
79	"	117-44	"	106	성내동 21	원장학
80	"	117-1	"	617	풍납동 97	김용선
81	"	117-2	대	33	천호동 397-147	서학순
82	"	180-6	전	10	화양동 51	홍점복
83	"	181-2	"	119	풍납동 181-21	김창운
84	"	181-3	"	102	" 186	손치윤
85	"	181-1	대	89	천호동 397-147	선학순
86	"	180-1	전	510	화양동 51	홍점복
87	"	182-1	"	7	성 동 "	"
88	"	183-1	"	522	경운동 58	안효근
89	"	183-3	"	274	"	"
90	"	184-1	"	55	행당동 9	이봉호
91	"	184-9	"	317	경운동 58	안효근
92	"	184-1	"	150	풍납동 87	손치석
93	"	184-12	"	43	"	"
94	"	184-3	"	21	행당동 9	이봉호
95	"	184-6	"	136	암사동 528	박춘식
96	"	195-13	잡	846	진관외동 175-38	김병학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적 (㎡)	소 유 자	
					수 소	성 명
97	풍납동	195-14	잡	242	진관외동 175-38	김 병 학
98	"	193-3	전	1,994	천호동 454-7	황명환
99	"	204-1	"	565	경운동 1-8	안효근
100	"	214-1	"	406	자양동 22-38	박봉수
101	"	214-2	"	354	풍납동 97	박봉수
102	"	213-3	"	456	경운동 1-8	안효상
103	"	213-2	"	60	"	"
104	"	212-3	"	504	풍납동 212	김기수
105	"	300-1	"	150	후암동 55-11	"
106	"	300-5	잡	957	충신동 67-9	이영순
107	"	300	하천	922		
108	"	301-1	잡	340	진관외동 175-385	김 병 학
109	"	301-4	"	880	천호동 402	박순여
110	"	302	전	242	쌍문동 533-6	임오정
111	"	98-5	"	817	풍납동 129	이영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8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41 호 (77.9.26) 및 동고시 제 365 호 (77.10.19) 로 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

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 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2.18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장서구신정동 경인지구 10-1 구획의 2 ( 신정동 56-3 의 33 필지 )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양목국민학교
3. 면적 및 규모 : 4,572.9 명
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시

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교육위원회  
회 교육감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년월일 : 1980.

나. 준공예정일 : 착수년월일로 부터  
1년

6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  
생략)

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655 호 (78. 12.14) 및 동고시제 182 호 (79.5. 4)로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승 인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 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권 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2.18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 강서구 목동 경인 2 차지구 162-2 가구획의 7

( 목동산 59 의 9 필 )
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학 교 ) 정목국민학교

3. 년적및규모 : 4,347 평

4. 사업시행자 주소,성명 : 서울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년월일 : 1980.

나. 준공예정일 : 착수년월일로부터 1년

6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 생략)

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0 호

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인가

1. 서울특별시 공고제 33 호 (80.2.4) 로 공담공고 인하고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제 26 조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.

2.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공시 송달할 것임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 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2

서울특별시장

<p>1) 사업명 : 이화로-동승아파트간 도로매설공사</p> <p>2) 사업시행기의 위치 : 종로구충신동 53-16-이화동 9-313 앞</p> <p>3)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(종로구청장)</p> <p>4) 사업의시행기간 : 80.2. -80.12.31</p> <p>5) 사업의 규모 L = 8 미터-12 미터 L = 506 미터 (12미터구간 180 미터 8 " 326 미터)</p> <p>6)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표시 : 별첨</p> <p>7)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다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가 증</p> 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종로구 충신동 53 의 13 -이화동 9 의 313 앞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이화로-동승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B = 8 미터-12 미터</p>	<p>L = 506 미터 (12미터구간 180미터) 8미터구간 326미터)</p> <p>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(종로구청장)</p> <p>5. 사업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 호</p> <p>6. 사업의 기간 : 1980.2 - 1980.12.31</p> <p>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2. 서울특별시</p> <p>인가조건</p> <p>1)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2) 별첨 개략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
--	--

토 지 조 서

순번	소재지		지목	평수	소유자	
	동	지번			주소	성명
1	충신동	53-25	대	23.0 평	충신동 53-1	정명채
2	"	53-2	"	82.6 "	" 53-2	박순자
3	"	53-26	"	21.6 "	" 53-3	주세진
4	"	53-27	도로	36.8 "	성동구구의동222-38	성현남
5	"	51-1	대	42.3 "	충신동 51	이영순
6	"	50-3	"	65.8 "	" 50	유영순

순번	소재지		지목	평수	소유자	
	동	지번			주소	성명
7	충신동	49-1	대	44.2 ㎡	충신동 49	홍철희
8	"	5-88	"	23.1 "	" 5-88	남숙희
9	"	5-91	"	89.9 "	" 5-37	석양순
10	"	5-92	"	5.5 "	" 5-38	이돈순
11	"	5-90	"	58.1 "	" 5-11	이임성
12	"	5-34	"	26.4 "	" 1-28	김홍기
13	"	5-87	"	26.4 "	" 5-87	안이진
14	"	5-89	"	12.3 "	" 5-1	박정삼
15	"	4-1	"	58.2 "	" 4	이종운
16	"	3-1	"	59.4 "	" 3	심향섭
17	"	2-1	"	56.5 "	" 2	박길원
18	이화동	14-1	"	5.9 "	이화동 14	이보현
19	"	13-1	"	52.9 "	" 13-1	김명순
20	"	12-6	"	4.8 "	" 12-2	김용래외4인
21	"	12-5	"	24.2 "	" 12-3	박한영
22	"	12-4	"	53.9 "	" 12-1	김옥실
23	"	11-7	"	10.0 "	" 11	김학봉
24	"	11-6	"	30.3 "	" 11-2	김수봉
25	"	11-5	"	7.8 "	" 11-4	이필숙
26	"	11-1	"	27.4 "	" 11-1	심준식
27	"	10-41	"	55.8 "	" 10-5	정을용
28	"	10-48	"	58.9 "	" 10-5	김진준
29	"	10-47	"	53.8 "	" 10-9	전영민외1인
30	"	10-59	"	14.6 "	"	"
31	"	10-46	"	54.3 "	" 10-2	김기화
32	"	10-58	"	30.9 "	"	"
33	"	10-13	"	30.4 "	" 10-13	민영돈
34	"	10-14	"	56.2 "	"	"
35	"	10-24	"	52.6 "	" 10-24	이임성

순번	소 채 지		지 목	평 수	소 유 자	
	동	지 번			주 소	등 급
36	이화동	10-56	대	16.9 m <sup>2</sup>	이화동 10-12	이 후 종
37	"	10-3	"	43.3 "	" 10-3	정 윤 영
38	"	10-38	"	2.0 "	"	"
39	"	10-3	"	38.3 "	" 10-3	이 봉 재
40	"	10-38	"	4.6 "	"	"
41	"	10-51	"	14.3 "	"	국
42	"	10-50	"	32.1 "	" 10-36	이 득 수
43	"	10-49	"	5.9 "	" 10-35	유 영 한
44	"	9-355	"	18.0 "	" 9-24	이 완 종
45	"	9-356	"	113.0 "	" 9-265	양 명 순
46	"	9-5	"	113.4 "	" 9-5	이 평 산
47	"	9-359	"	56.8 "	" 9-41	이 문 전
48	"	9-360	"	41.7 "	진농동 65-76	한복형외1인
49	"	9-362	"	32.5 "	"	국
50	"	9-361	"	0.3 "	이화동 9-29	이 윤 용
51	"	9-400	"	34.6 "	종로4가63-1	간 현 옥
52	"	9-401	"	23.5 "	"	"
53	"	9-402	"	51.0 "	"	"
54	"	9-398	"	21.9 "	이화동 9-32	김 석 영
55	"	9-399	"	11.1 "	"	"
56	"	9-386	"	96.2 "	" 9-245	박 순 금
57	"	25-18	"	3.0 "	성북동1가35-1	이 교 홍
58	"	9-405	"	2.4 "	"	"
59	"	9-404	"	1.7 "	"	"
60	"	9-403	"	4.1 "	"	"
61	"	9-397	"	16.3 "	"	"
62	"	9-396	"	48.2 "	"	"
63	"	9-394	"	8.3 "	"	"
64	"	9-393	"	9.3 "	"	"

순번	소재지		지목	평수	소유자	
	동	지번			주소	성명
65	이화동	9-392	대	16.7 m <sup>2</sup>	.	국
66	"	9-391	도로	17.8 "		"
67	"	9-304	대	3.3 "		"
68	"	9-390	도로	9.5 "		"
69	"	9-389	"	16.8 "		"
70	"	9-199	대	19.2 "		"
71	"	9-200	"	13.9 "		"
72	"	9-196	"	28.4 "		"
73	"	9-388	"	5.0 "		"
74	"	9-154	"	29.8 "		"
75	"	9-379	"	21.7 "		"
76	"	9-380	"	21.3 "		"
77	"	9-381	"	8.9 "		"
78	"	9-382	"	89.1 "		"
79	"	9-153	"	27.4 "		"
80	"	9-384	"	7.6 "		"
81	"	9-385	"	5.4 "		"
82	"	9-387	"	10.8 "		"

건물조서

순번	소재지		구조	평수	소재지	
	동	지번			주소	성명
1	충신	53-2	목조와습	12.0 평	충신동 53-2	박순자
2	"	53-3	"	5.0 "	" 53-3	주세진
3	"	53-1	"	2.0 "	" 53-1	정명채
4	"	51	"	7.34	" 51	이영순
5	"	50	"	12.0 "	" 50	유영순
6	"	49	"	4.0 "	" 49	홍철희
7	"	5-38	"	1.5 "	" 5-38	이돈순

## 건 물 조 서

순번	소재지		구 조	평 수	소 유 자	
	동	지 번			주 소	성 명
8	충 신	5-37	목조와즙	17.0	충신동 5 - 37	석양순
9	"	5-88	"	3.0	" 5 - 88	남숙희
10	"	5-87	"	4.0	" 5 - 87	안이진
11	"	5-34	"	3.0	" 1 - 28	김흥기
12	"	5-11	"	8.5	" 5 - 11	이임성
13	"	4	"	7.94	" 4	이종운
14	"	2	"	5.0	" 2	박길원
15	이 화 동	13- 1	목조초즙	8.91	이 화 동 13 - 1	김명순
16	"	12- 2	목조함석즙	2.0	" 12 - 2	김용희외4인
17	"	11- 2	목조초즙	7.8	" 11 - 2	조한순
18	"	11- 1	"	4.29	" 11 - 1	심준식
19	"	10- 5	목조와즙	1) 9.5 2) 3.0 지하) 1.0	" 10 - 5	정울용
20	"	10- 9	목조와즙	8.0	" 10 - 9	전영민의1인
21	"	10-4	"	7.0	" 10 - 4	김기화
22	"	10-13 -14	목조세멘와즙	2.3	" 10 - 13	민영돈
23	"	10-24	"	4.5	" 10 - 24	이임성
24	"	10- 3 -38	연와조평옥개	1) 7.4 2) 7.4 3) 7.4	" 10 - 3	이봉재
25	"	10- 3 -38	연와조평옥개	1) 6.0 2) 6.0 지하) 4.16	" 10 - 3	정운영
26	"	10-36	세멘부력평옥개	1) 6.0 2) 6.0 3) 6.0	" 10 - 36	이득수
27	"	9-42	목조와즙	3.0	전농동 66 - 76	한복형외1인
28	"	9-41	"	6.0	이 화 동 9 - 41	이문건

순번	소재지		구조	평수	소유자	
	동	지번			주소	성명
29	이화동	9-265	목조와즙	9.25	이화동 9-265	양명순
30	"	9-5	"	15.5	" 9-5	이명산
31	"	9-245	철근콘크리트평옥개	1) 10.32 2) 10.9	" 9-245	박순금
32	"	9-32	목조와즙	8.0	" 9-32	김석영
33	"	산1-2 제32호	세멘부력세멘와즙	1) 5.8	이화동산 9-32	안수경
34	"	산1-2 제17호	"	1) 2.3 2) 0.7	" 9-17	안자문
35	"	산1-2 제22호	"	1) 2.4 2) 0.6	" 9-22	김인화
36	"	산1-2 제21호	"	1) 3.4	" 9-21	황정순
37	"	산1-2 제19호	"	1) 9.9 2) 4.1	" 9-19	김창구
38	"	산1-2 제20호	"	1) 3.9	" 9-20	김승구
39	"	산1-2 제17호	"	1) 5.8	" 9-17	이대순
40	"	산1-2 제15호	"	1) 9.9 2) 4.1	" 9-15	김동열
41	"	산1-2 제13호	"	1) 9.9 2) 4.1	" 9-13	김삼순
42	"	산1-2 제11호	"	1) 9.9 2) 4.1	" 9-11	홍인숙
43	"	산1-2 제8호	"	1) 9.9 2) 4.1	" 9-8	백금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0 호 (79. 12.13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

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.

1980. 2. 19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돈암동 184-127 외 18 필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, 한성여중고 학생실험실습실 신축부지조성사업

다. 사업의규모 및 면적 : 2,970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김의형
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1) 착수년월일 : 80. 2. .

2) 준공예정일 : 80. 5. 31

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(생략)

사. 공사설계도서 : 별첨 (생략)

※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 끝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3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2 호 (78.9.11) 로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 및 동 고시 제 684 호 (78.1

12.26) 로 변경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양재동 산 73-3 외 10 필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 (주) 금성사 주차장 신설

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 번지

(주) 금성사 대표이사 허신구

라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착공 : 1979.2.5.

준공예정일 : 1979.6.30

변경준공예정일 : 1980.3.31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(생략)

바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

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생략)
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4호

1980. 2. 19

서울특별시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일부변경

가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고척동 산 58-5 의 18 필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 ( 77. 2. 18 ) 호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된 고척동 산 58-5 의 18 필지 상의 동양공업전문대학교 용지에 대하여 일부 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 79. 12. 10 )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동양공업전문대학교

다. 사업시행면적 : 10,908 ㎡

라. 사업규모변경사항 : 별첨 설계도서와 같음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,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

마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영등포구 고척동 62-160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조승계

인 동양학원 이사장 조승계

바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당		초		변		경	
착	공	준공예정일		착	공	준공예정일	
1977. 2. 24		1979. 8. 31		1977. 2. 24		1980. 4. 25	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 별첨 )

아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( 별첨 )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소재지	지	지	지	비	고
	번	목	적		
영등포구고척동	산 58 - 1	임	600 평중 122		학교법인동양학원
	산 58 - 5	"	30		"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비 고
영등포구고척동	산 58-6	임	1,080평중 825.1	학교법인 동양학원
	산 59-1	"	930	"
	62-160	대	6,850평중 462	"
	52-167	"	30	"
	62-40	"	61	환지확정지
	62-41	"	55.1	"
	62-42	"	54.9	"
	62-43	"	57	"
	62-44	"	57.4	"
	62-45	"	51.4	"
	62-46	"	53	"
	62-47	"	53	"
	62-49	"	53.3	"
	62-50	"	61	"
	62-123		770.4평중 152	환지확정지, 시유지
	62-126	도로	387.9 " 95.6	" "
	62-108	대	121평중 96	" "
계		3,299.8평	(10,908㎡)	

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  
한 관계인 주소, 성명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 성 명	이해관계인 주소성명	비 고
영등포구 고척동	산 58-1	임	600평중 122	학교법인		
	산 58-5	"	30	동양학원		
	산 58-6	"	1,080평중 824.1	"		
	산 59-1	"	930	"		
	62-160	대	850평중 462	"		
	52-167	"	30	"		
	62-40	"	61	"		환지확정지

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소유자 성 명	이해관계인 주소성명	비 고
영등포구 고척동	62-41	대	55.1	학교법인		환지 확정지
	62-42	"	54.9	동양학원		"
	62-43	"	57	"		"
	62-44	"	57.4	"		"
	62-45	"	51.4	"		"
	62-46	"	53	"		"
	62-47	"	53	"		"
	62-49	"	53.3	"		"
	62-50	"	61	"		"
	62-123		770.4평중 152	서울특별시		"
	62-126	도로	387.9 # 95.6	"		"
	62-108	대	121평중 96	"		"
계		3,299.8평			(10,908㎡)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정정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73 호(78.7.27)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를 동고시제 531 호(78.10.13)로 지적승인하였으나 도면에 오류가 있었기 도시계획법제 13 조

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 지적 승인하고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2.

서울특별시장

\* 도시계획시설(도로)정정 지적 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설	초로	2	8미터	120미터	산 89	산 115	장문고진입로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6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)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503 호 (79.12.5)로 시설 결정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법제 13 조와 전실부</p>	<p>고시제 463 호 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2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\*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설	여객자동차정류장	영등포구신길동 446	1,891	태진운수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7 호</p> <p>전기용품제조업허가위소공고</p> <p>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규정</p>	<p>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2.13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업체명	대표자	허가번호	소재지	허가일	제조구분	취소사유
성창기계공업 (주)	최영호	1-6-38	공장 : 관악구 봉천동 719-3 본사 : 용산구 동자동 43-37	73.11.	소형교류전동기류 제조	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 7 조 위반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42 호

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 
건축계획변경 공람광고

구내 삼화분구 건축계획  
나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
다. 장 소 : 당시 건축국 재개발  
1 과

1. 서울특별시 공고제 79 호 (78.3.9)

로 확정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삼화분구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제 33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52 조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중 공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0.2.

서울특별시 장

가. 공람내용 : 반도특정가구 정비지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43 호

제목 :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제 26 조의 지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0.2.20

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업 체 명	대표자	소 제 지	허가번호	제 조 구 분	취 소 사 유
삼일조명	지경식	성수 2 가 310-8	1-10-13	광원용용기구	제 8 조 1 항 1 호 위반
"	"	"	1-12-15	휴대발전기 및 상기이외의교 류용 전기기 계 기구	"
서울전자산업사	소홍선	성수 1 가 13-194	1-7-9	전 열 기 구	제 8 조 1 항 5 호 위반
이운산업사	이무부	성수 2 가 299-134	1-7-56	"	"

◎ 공고제 44 호

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  
행정처분

규칙제 72 조의 2 규정에 의거 소방용  
기계기구 제조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 
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소방법제 3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

1980.2  
서울특별시 장

다  
음

업체명	대표자	허가번호	소재지	허가일자	제조품목	영업정지사유	영업정지 기간
(주) 한일 소방기구	최남근	내무부허가 제 63 호	강서구염창동 31-8	76.11.16	휴도능	소방법제 37 조 제 1 항및동법	80.2.21 ~ 3.21
삼성박엽 공업(주)	전용태	내무부허가 제 65 호	동대문중화동 110-15	74.9.16	방화액및 방화도료	시행규칙 제 72 조의 2	
대과방재 (주)	강훈성	내무부허가 제 57 호	동대문면북동 186-11	75.12.29	경보기구	규정 위반	
신농방 상사(주)	박상연	내무부허가 제 17 호	영등포도림동 222-1	78.11.23	방화액및 방화도료		

◎ 동대문구청 공고제 13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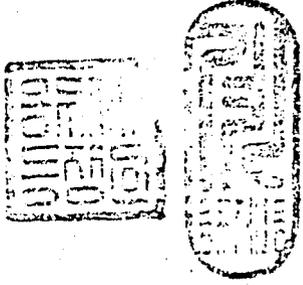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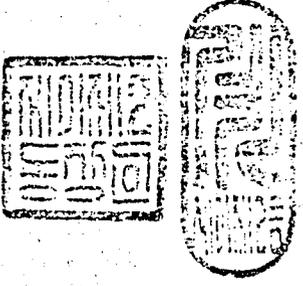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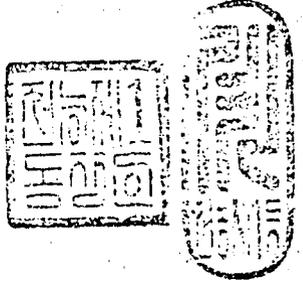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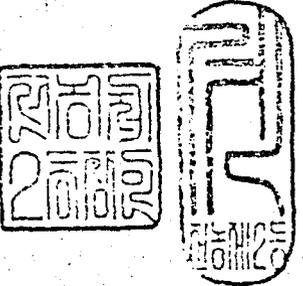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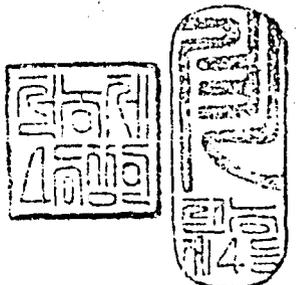
공인신조개각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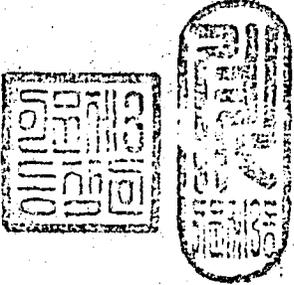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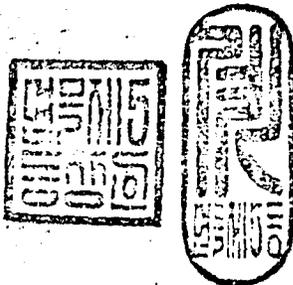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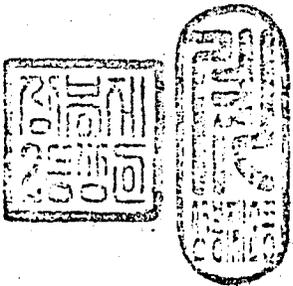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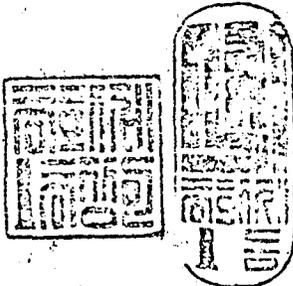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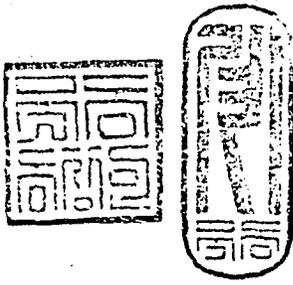
동·중화 2 동·남동·방우 2 동의 공인  
신 개각 80.3.1 부터 사방을 승  
인하였기 동 조례 9,10 조에 의거  
이를 공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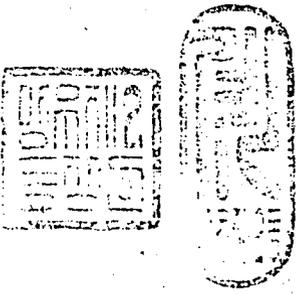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공인조배 제 6 조의 규  
정에 따라 당구 각부 1 동·제기 2 동  
전중 1 동·전중 2 동·전중 4 동·취경동  
이문 3 동·면목 5 동·상봉 2 동·중화 1

1980.2.16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

인  영		인  영	
공인명	용 두 1 동 장 인 및 계 인	공인명	제 기 2 동 장 인 및 계 인
인  영		인  영	
공인명	진 농 1 동 장 인 및 계 인	공인명	진 농 2 동 장 인 및 계 인
인  영		인  영	
공인명	진 동 4 동 장 인 및 계 인	공인명	휘 경 동 장 인 및 계 인

인 영		인 영	
공인명	이문 3 동 장 인 및 계 인 .	공인명	면·부 5 동 장 인 및 계 인
인 영		인 영	
공인명	상 봉 2 동 장 인 및 계 인	공인명	중 화 1 동 장 인 및 계 인
인 영		인 영	
공인명	중 화 2 동 장 인 및 계 인	공인명	북 동 장 인 및 계 인

인  영		
공인명	방우 2 등 장인 및 계인	

--	--